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9.

발 의 자 : 김기웅 · 서명옥 · 고동진
임종득 · 윤용근 · 이만희
박형수 · 강승규 · 윤재옥
박성훈 · 김석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민사·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, 교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·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. 이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.

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·관리하여 분쟁 및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이는 사후적 지원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음.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간주하여 그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

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,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신고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,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·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뿐 아니라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교육의 질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 신설 등).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)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·감독기관(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, 공립·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. 이하 “관할청”이라 한다)은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「유아교육법」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복성 및 무고 등에 대한 판단 기준·방법·절차와 고발의 시기·절차 등에 필
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·감독기관(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, 국립·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. 이하 “관할청”이라 한다)과”를 “관할청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조사·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제21조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

제21조제1항 중 “교육감은”을 “관할청은”으로, “상담을”을 “상담 및 소송 지원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2(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)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·감독기관(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, 공립·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. 이하 “관할청”이라 한다)은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「유아교육법」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</u>

제20조(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)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지도·감독기관(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, 공립·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. 이하 “관할청”이라 한다)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(이하 “피해교원”이라 한다)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(이하 “보호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백한 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복성 및 무고 등에 대한 판단 기준·방법·절차와 고발의 시기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) ① 관할청과-----

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 3. (생 략) ② ~ ⑥ (생 략) 제21조(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<u>교육감은 「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 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 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<u>상담</u>을 제 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u> ② (생 략)	<u>3. 조사·수사 및 법률적 분쟁</u> <u>에 대응하기 위한 제21조에</u> <u>따른 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</u> <u>및 소송 지원</u>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21조(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 영) ① <u>관할청은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<u>상담</u> <u>및</u> <u>소송 지원</u>을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